

#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정관(定款)변경 보고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06월 07일  
제출자 : (재)세종문화회관 사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'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·운영 조례' 개정(22.3.10.)에 따른 정관 개정
- 나.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의 '출연기관 임원 연임 개선계획(안)'에 따른 조례개정의 후속 조치로 연임 규정을 개정하여 탄력적인 인사운영이 가능케 하고, 이를 통해 우수 인재가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제10조(임원의 임기)
  - 임원의 연임 기간을 3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변경하고,
  -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삭제

## 3. 신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<b>제10조(임원의 임기)</b>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.</p> <p>②노동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근로자투표 및 추천위원회 심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.</p> <p>③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에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.</p> <p>④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.</p> <p>⑤노동이사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노동이사의 임기와 상관없이 노동이사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.</p>	<p><b>제10조(임원의 임기)</b>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<u>1년 단위로</u> 연임될 수 있다.</p> <p>②노동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근로자 투표 및 추천위원회 심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선출 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<u>한다</u>.</p> <p>③~⑤ (좌동)</p>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련 근거

- 1) 제305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안건 통보(서울시 기획담당관-2423호)
- 2) 서울시보 제3767호(2022.3.10.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이사회 의결 예정

# 붙임 1. 제305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안건 통보 (서울시 기획담당관-2423호)

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!

1·SEOUL·U  
1945·서울·1945

서울특별시

서울시 홈페이지  
seoul.go.kr

수 신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 목 제305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안건 통보

1. 서울특별시의회 의사담당관-871(2022.2.21.)호와 관련입니다.
2. 제305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, 2022.2.21.자로 이송된 의결안건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, 소관 부서에서는 후속 조치사항을 이행(타 부서는 참조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의결안건 : 총 64건 : 조례안 42, 동의안 10, 결의안 3, 청원 3, 의견청취안 4, 재의 2
  - 후속조치 : 의결조례안에 대한 확정방침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등

- 붙임 1.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안건 이송 공문 1부.  
2.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안건 이송 목록 1부.  
3. 심사보고서 각 1부(별도송부). 끝.

서울특별시



수신자 서관과01-174, 서사01-41, 서울시투자기관, 서울시출연기관

주무관 **박미진** 의회협력팀장 **송학용** 기획담당관 02/22 김수덕

협조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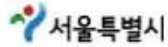
시행 기획담당관-2423 ( 2022.02.22. ) 접수 기획조정팀-325 ( 2022. 2. 24. )

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, 기획담당관 / http://www.seoul.go.kr  
(태평로1가)

전화 02-2133-6632 /전송 02-2133-0819 / miffie7@seoul.go.kr / 대시민공개

## 붙임 2. 서울시보 제3767호 (2022.3.10.)

서울시보 제3767호



2022. 3. 10.(목)

◆ 서울특별시조례 제8358호

**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**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 
2022년 3월 10일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될 수 있다.”를 “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법인의 이사장·사장·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다만, 임원을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>

1. 개정이유

- 가.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은 2019년 1월 투자·출연기관 간 상이한 임원 연임기간을 1년 단위로 통일하여 탄력적으로 인사운영을 하고자 ‘출연기관 임원 연임 개선계획’ 을 시장 방침으로 세웠고, 개정 후 계획에 따라 실행할 예정이었음.
- 나. 약 3년이 지난 2021년 10월 현재 세종문화회관의 연임 규정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조례 및 정관에 따라 임원이 연임할 경우 3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음.
- 다. 따라서 공기업담당관이 세운 방침의 목적에 맞게 세종문화회관의 연임 규정을 1년 단위로 개정하고 1회로 제한된 규정은 삭제하여 탄력적인 인사운영이 가능케 하고, 이를 통해 우수인재가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임원의 연임 기간을 3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변경하고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삭제함(제8조제1항).